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자동차정비)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26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직훈교사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정년 적용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 (경기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41)

2 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직훈교사	자동차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 자동차정비 관련 분야 수형자 직업훈련 ※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 과정 ○ 수형자 대상 직업훈련 이론 및 실기교육 ○ 수형자 대상 취업알선 및 외부자원 유치 ○ 수용자 계호 및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1857호) 제28조(신규채용)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728호)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6757호)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35638호)
-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법무부예규 제1362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17호)
- 「법무부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실시권 위임규칙」(법무부훈령 제1535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자동차 정비	자격증	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자동차정비)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자동차) 기사 자격 보유자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자동차)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자동차정비)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① 전문경력관 직업훈련교사 다군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전 별정직 직업훈련교사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자동차정비) 실무 경력자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해당분야 및 자격증 / 15.기계 15-9. 자동차정비
 - 기사 이상 자격직종 :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자동차정비기사
 - 산업기사 자격직종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경력인정직종 :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엔진정비, 자동차새시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자동차도장, 자동차정비검사, 전기자동차정비, 전기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경영관리, 자동차정비현장관리, 오토바이정비, 자전거정비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해당분야와 자격직종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27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별표1]에 따르고,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와 자격직종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름.

※ 자격증 ③의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경력 ①로 응시하는 경우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에 의한 다군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근무한 자에 한함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 자격증, 경력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1개 선택하여 응시
예) 자격증① / 자격증② / 자격증③✓ / 경력① /
→ 자격증, 경력을 각각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6.12.2.)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함(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개인사업자 경력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 경력은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해 인정하고,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인정 될 수 있음
 -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 ①경력(재직) 증명서, ②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자격 득실 이력확인서 ➡ ①,② 모두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 중 1개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추가 제출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근무기간이 긴 경력)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다. 우대요건 및 가산점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6개월 이상의 직무분야(자동차정비)와 관련된 근무경력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우대요건 등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우대요건 관련

-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6개월 이상의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중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우대)

※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 직무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의 국가·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 경력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 개인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명(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해당 기간 매출·소득액, 계약서 및 포트폴리오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심의회 판단에 따라 일정 범위 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 **[직무관련 자격증] 응시자격 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한 상위 자격증 1개에 대해 차등 배점**

- 기술사 : 차량기술사
- 기능장 : 자동차정비기능장
- 기사 :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자동차정비기사
- 산업기사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기능사 :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이론 자동차정비기능사

- **[정보화관련 자격증] 정보통신, 사무관리 분야 상위 자격증 1개에 대해 차등 배점 (국내 자격증에 한함)**

- A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빅데이터분석기사, 컴퓨터시스템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B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프로그래밍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12.1.1.통합 이전 워드1급 포함)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응시인원 5명 이하인 경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적극적 서류전형(응시인원 6명 이상인 경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명 선발(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평가요소) ① 소통·공감, ② 헌신·열정, ③ 창의·혁신, ④ 윤리·책임
 -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10.26.(월) ~ 11.5.(목)	'26.11.3.(화) ~ 11.5.(목)	'26.11.23.(월)	'26.12.2.(수)	'26.12.22.(화)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게재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11. 3.(화) ~ 11. 5.(목)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방문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겔봉투에 ‘전문경력관 나군(자동차정비)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이메일 접수)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고, 제목은 ‘전문경력관 나군(자동차정비) 응시원서 접수’라고 작성

우편 주소	(우편번호 18539)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이메일 주소	yaholjw1@korea.kr	전 화	031-369-1424

※ 접수일시를 초과한 이메일 접수는 무효처리함

-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접수자 개별통보 예정
 - 접수 후 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응시자는 접수기관에 전화 확인
 -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됨

나.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서식 제5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별지서식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별지서식 제9호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별지서식 제10호
	공정채용 확인서	○ 별지서식 제11호
	응시자격 요건 필수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최종학력 증명서(학위증) 1부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12호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13호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 증명원 1부	
	(우대요건) 근무경력 증빙서류 1부	
	(우대요건)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우대요건)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명서 1부	붙임3 제출서류 안내 참조

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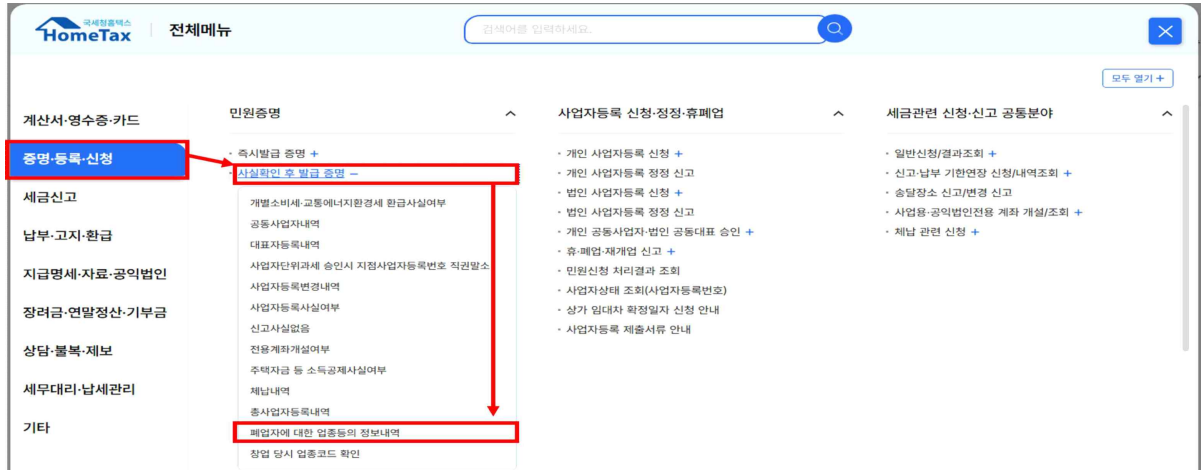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국세청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소득금액증명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2. 25. ~ '27. 1. 24. 【별지서식 제10호】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7. 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함

9 안내 및 참고사항

- 응시희망자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득이하게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신원조회결과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임용당일퇴직,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의사 철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로 “응시표”와 “응시의사 철회/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련서류의 사본을 남겨두고 이를 반환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12. 25. ~ '27. 1. 24. 【별지서식 제10호】

- 각종 증명서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 인사담당(031-369-1424)에게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 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알리고, 처분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직훈교사	자동차정비	전문경력관 나군	1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직업훈련과 (경기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과정 수업 ○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등 자격증 취득 과정 ○ 직업훈련 수형자 대상 이론 및 실기교육 ○ 수용자 계호 및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 마인드(공익 추구 봉사자)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유연한 사고, 즉각적 대응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계획 수립, 교안 작성,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등에 관한 전문지식 ○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문서작성 및 활용 지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관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해당분야(자동차정비)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자동차) 기사 자격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자동차)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자동차정비)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경력관 직업훈련교사 다군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전 별정직 직업훈련 교사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해당분야(자동차정비) 실무 경력자

우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6개월 이상의 직무분야(자동차)와 관련된 근무경력 ○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
------	--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목록 1부 (별지서식 제1호)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응시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경력관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서명 필수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3매 이내로 작성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서명 필수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7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서명 필수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서명 필수
8.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9호) : 필수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필 서명 필수

구 분	내 용
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10.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 필수서류	○ 자필 서명 필수
11. 응시자격 요건 필수 자격증 사본 1부 : 필수서류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사항 참조
12. 주민등록초본 1통 : 필수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3. 최종학력 증명서(학위증) 1부 : 필수서류	○ 전공분야 표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최종학력이 대학원인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14.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2호) 경력인정 필수서류	○ 우대요건 및 응시자격요건 중 자격증③, 경력① 요건 해당자
15. 경력(재직) 증명서 1부 (별지서식 제13호) : 필수서류 -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제1호) 확인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16.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선택	○ 우대요건 해당자
13.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 1부(별지서식 제14호)	○ 희망자에 한함
1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별지서식 제15호)	○ 희망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별지서식 제1호를 표지로 사용하여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직급)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자동차정비(전문경력관 나군)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 출 서 류 명	필수 여부	제출유무
1	응시원서 1부(수입인지 부착) ※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필수	☐
2	이력서 1부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필수	☐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7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필수	☐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필수	☐
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필수	☐
10	공정채용 확인서	필수	☐
11	응시자격 요건 필수 자격증 사본 1부	필수	☐
12	주민등록초본 1통(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필수	☐
13	최종학력 증명서(학위증) 1부	필수	☐
14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서 1부	선택	☐
	경력(재직)증명서(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 해당) 1부 (폐업회사는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등 제출)	선택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필수, 경력증명서 기간과 동일)	선택	☐
	소득금액 증명원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는 필수, 경력증명서 기간과 동일)	선택	☐
15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우대요건 해당) 1부	선택	☐
16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우대요건 해당) 1부	선택	☐
17	응시수수료 면제 관련 증명서(면제 대상자) 1부	선택	☐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스테이플을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성명 (서명)

<별지서식 제2호> (예시)

(앞 면)

응시원서 (원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본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원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경력관 나군(자동차정비)	
응시자격		예) 자격증① / 자격증② / 자격증③✓ / 경력①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경력관 나군(자동차정비)	
응시자격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의사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도착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전문경력관 나군(자동차정비)
 -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반드시 하나를 택하여 표시)
 -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 ⑥ 정부수입인지 : 5급 이상은 10,000원, 6·7급/연구사/전문경력관은 7,000원,
8급 이하는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서식 제3호> (예시)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자동차 정비	응시 자격 요건	자격요건 1~4중 택1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선발예정직위에 필요한 응시자격만으로 서식 구성)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자격요건 충족에 필요한 자격증만 기재					
경 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자격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만 기재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3.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시험실시기관은 직무 특성에 따라 필요한 우대요건을 정할 수 있음)

직무 관련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 (○○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직무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상위 1개만 작성		
정보화 관련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상위 1개만 작성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기재. 담당업무는 상세히 작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 응시자격 】 : 해당사항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에
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분야 경력 요건 중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
에서 8년의 경력이 있을 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3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
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통상근무자) 또는 ‘비전임’(단시간근무자)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 통상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 우대요건 】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자격증 직무관련 자격증의 경우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경력관 나군(자동차정비)
----	--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경력관 나군(자동차정비)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수상실적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문경력관 나군(자동차정비) 채용 응시자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20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학력·경력·주거지 제한 없음(단,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들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p>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p> <p>*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p>	<p>해당 ☐</p> <p>비해당 ☐</p>
<p>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p> <p>*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p> <p>*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p>	<p>해당 ☐</p> <p>비해당 ☐</p>
<p>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p> <p>비해당 ☐</p>
<p>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p>	<p>해당 ☐</p> <p>비해당 ☐</p>
<p>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p>	<p>해당 ☐</p> <p>비해당 ☐</p>
<p>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p>	<p>해당 ☐</p> <p>비해당 ☐</p>
<p>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p>	<p>해당 ☐</p> <p>비해당 ☐</p>
<p>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p>	<p>해당 ☐</p>
<p>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p>	<p>해당 ☐</p>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관련분야 근무경력 확인서(예시)

※ 근무경력 확인서는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된 것에 한해 기록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근무지	근무경력							근무기간			기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홍길동	'75.00.0.	○○기관	2001	1	1	~	2005	6	30	4	6	0	민영회사
		○○학교	2005	7	1	~	2010	12	31	5	6	0	민영회사
		○○공사	2011	2	16	~	2014	2	11	2	11	26	공공기관
		근무경력 합계	자격증 취득 후 근무경력 전체를 말합니다.										
		* 근무경력이 있을 시, 예시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민영회사,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여부를 반드시 기재 및 확인											

2026. . .

작성자 : (인/서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경력증명서 발급시스템 문제 등)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경력 사항	① 근무기간		업체명 (근무처)	직위 (직급)	② 담당업무	③ 근무형태	④ 비고	
	부터	까지						
	'14.7.1	'16.6.31	(주) 00	주임	직업훈련교사 (자동차정비)	상근/비상근/ 시간제		
	'16.7.1	'17.6.31			육아휴직			
	'18.7.1	'19.6.31	(주) 00	주임	직업훈련교사 (자동차정비)	상근/비상근/ 시간제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년월일	종 류	해당기관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발급 부서				
				발급자 성명		(인)		
<p>① 근무기간 : 직무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업체에서 근무기간을 정확히 기재 ※ 근무기간에 휴직기간이 있으면 반드시 별도 명시</p> <p>② 담당업무 : 직무분야 업체 등에서 담당업무 구체적 기재</p> <p>③ 근무형태 : 상근/ 비상근/시간제 구분 (비상근 및 시간제의 경우, 일주일 기준 근무 시간 기재)</p> <p>④ 비고 :</p>								

<별지서식 제15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
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
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